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2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해민·김준형·차규근

황운하 • 강경숙 • 민병덕

김우영 · 김선민 · 김재원

백선희 • 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

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구축형연구개발사업의사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1,0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전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의2에 따른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u><</u> 삭	제>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					
<u>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u>					
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					
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					
<u>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u>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4(구축형연구개발사업의 사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1,0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의2에 따른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